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제정 2025. 3. 4. 조례 제3724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6 조에 따라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설치 및 배치) ① 안양시의회 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은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둔다.
 -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에 배치하며, 임용·복무 등은 「지방공무 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등 관계법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3조(직무 범위)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조례 제정·개정 및 폐지 지원
 - 2. 예산·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·수집·분석 및 지원
 - 3.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 - 4.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
 - 5. 의원의 5분 자유발언·시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 - 6.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·자료 작성·참석 지원
 - 7. 그 밖에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
- 제4조(지휘·감독) ① 정책지원관은 제3조에 따른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.
 -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- 제5조(직무수행의 제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 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.
 - 1.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
 - 2.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

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- 3.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
- 4. 선거·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,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
- 5. 제3조의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
-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.
- 제6조(비밀엄수)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 는 안 된다.
 - 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,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